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 자격 규정〉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70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 자격 규정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정현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6. 5. 27.

다. 회 부 일 : 2026. 5.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는 심의단계와 설계단계에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한 정보통신 기술전문가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건물공간계획 확정 전 집중구내통신실(MDF), 층통신실(TPS), 방재실 등 필수공간이 누락 또는 부족하게 반영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는 건물의 지능화,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영향을 주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홈으로 진화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 2021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아파트 해킹사건과 유사한 보안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설계부실로 인한 보안 취약점 발생 등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는 용역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공사의 규모와 종류별 역량과 경험 및 자격 등 설계 업무 수행에 관한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실 설계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품질 및 기술

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경우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설계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설계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해 설계품질을 확보하며 공사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2항 및 제76조제2호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정보통신공사 설계도서 작성 자격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를 발주받은 용역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함 (안 제7조제2항 신설).

- 안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76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설계 등) ① (생략) <u><신설></u>	제7조(설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 대상인 공사의 범위, 설계도서의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 ----- -----

현행	개정안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3. ~ 6. (생략) 제7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u>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아니한 자</u> 1의2. ~ 9. (생략) ②·③ (생략)	-. 제76조(벌칙)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자</u> 3. ~ 6.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 ----- -----. 1. <u>제7조제3항을</u>----- ----- ----- 1의2. ~ 9.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고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가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용역업자는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²⁾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②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를 말함³⁾.
-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1)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 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설계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용역업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정보관리·산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용역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전자·정보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에 관한 공사의 설계·감리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행위를 말함⁴⁾.

- 이처럼 현행 규정은 정보통신공사 설계의 발주대상을 용역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건축사의 경우 현행법상 용역업자로서 설계를 수주할 뿐 아니라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설계도서 작성자는 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의미하는 설계도서 서명·기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경력 요건을 별도로 갖추도록 요구받지 않고 있음.
- 개정안은 용역업자에게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가 작성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최근 침해사고 증가에 따라 정보통신 기기·설비에 대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가정용 홈네트워크의 보급 확대 및 주택 내 통신설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과 같이 정보통신공사 설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가 맡도록 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설계”란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아울러 전기 및 소방 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업을 별도로 규정하여 해당 분야 기술인력을 등록요건에 포함하고, 설계도서 작성자의 자격 요건을 정하는 등 설계의 전문성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음.

- 다만, 전력 분야는 설계도서 작성자의 자격을 전기 분야 기술사로 직접 제한하는 반면, 소방분야는 설계업 등록과 기술인력 기준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등 구체적인 규제방식에는 차이가 있음.

<전기·소방설비 설계 관련 규정>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의 일반용전기설비의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와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증설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보수 공사에 필요한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설계사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한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및 설계업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설계도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업·감리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이하 "설계업"이라 한다)

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이라 한다)

②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4와 같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이하 "감리업"

이라 한다)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설계업의 종류, 종류별 등록 기준 및 영업 범위(제27조제1항 관련)

종류		등록 기준		영업 범위
		기술인력	자본금	
종합설계업		전기 분야 기술사 2명 설계사 2명 설계보조자 2명	1억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전문 설계업	1종	전기 분야 기술사 1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3천만원 이상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 작성
	2종	설계사 1명 설계보조자 1명	1천만원 이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설계도서 작성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11조(설계)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그 용도, 위치, 구조, 수용 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①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 또한, 「건축법」 5) 및 「건축법 시행령」 6)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건축설비 설치 시 설계를 할 때 관계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협력 대상 분야에 전기, 소방, 기계, 급수·배수, 가스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정보통신 관련

5) 「건축법」

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별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 4. (생략)

6)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분야는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전기·소방 분야와 달리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 설계도서 작성 주체를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현행법상 정보통신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뿐 아니라 학력·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도 포함되고⁷⁾, 시행령에 따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와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등으로 구분되며, 국가 기술자격인 정보통신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까지 정보통신기술자에 포함되는 등 인정 범위가 광범위함.
- 그런데, 개정안은 설계도서의 작성자를 단순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설계자격자가 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특히, 용역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벌금형 부과대상이 되므로, 형벌의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되는 설계도서 작성자의 자격 범위가 법률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될 필요가 있음.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정보통신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범위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특급 기술자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5년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년(3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인정기술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관련 분야의 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나. 공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

○ 둘째,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를 정보통신 기술자가 작성해야 하므로, 정보통신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기존 용역업자가 공사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함. 이 경우 소규모 사업체는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특히, 위임된 대통령령에서 설계도서 작성자의 범위를 기술사자격⁸⁾이

포함된 특급 기술자로 규정할 경우, 설계의 품질은 제고될 수 있으나 중소 용역업자 등의 기술사 인력 확보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시행령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에 대하여만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기타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자격 의무를 신설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기존 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나, 법 시행 이후 적용 시점을 설계 발주 시 또는 설계도서 계약 체결 시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적용례를 두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의 설계 자격자를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유사한 개정안⁹⁾이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동 개정안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8) [참고] 주요 분야별 기술사 인력 현황

분야	정보통신분야		건설분야		전기·전자분야	
기술종목	정보관리 기술사	정보통신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건축시공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발송배전 기술사
인원	1,472명	837명	10,556명	10,171명	1,076명	891명

*분야별 기술사 인력이 가장 많은 기술종목 2개까지만 표기

자료: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 ‘기술사인력DB현황’(2026.8.)

- 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2211168, 2025.08.26. 소위 회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2212042, 2025.11.17. 소위 회부)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의

- 현행 법령상 설계 작성은 용역업자의 소속 기술자에 대한 분야 제한이 없어 타 분야 기술자가 정보통신공사의 설계도 작성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계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정보통신기술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하도록 주체를 명확히 하여 설계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2) 국토교통부: 신중검토

- 과거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당시, 설계·감리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정보통신설비 공사를 포함하도록 하면서도, 건축사가 기존에 수행하던 건축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유예규정을 둔 바 있음¹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건축사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종전 법률 개정의 취지와 배치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0)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7.18., 일부개정]

부칙 제2조(설계·감리 수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제2조제 8호·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의 설계 또는 감리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 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중 정보통신설비 및 전력시설물이 복합된 설비의 종류 및 해당 설비의 설계·감리 수행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개정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2년 연장한다.

3)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수정동의

-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정보통신인프라 품질 및 보안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자를 설계자격자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하위 법령에서 공사의 규모와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설계도서 작성자의 기준을 정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4) 대한건축사협회: 신중검토

- 용역업자에서 정보통신기술자로 설계자격의 기준을 한정하는 것은 통신 분야 인력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 비용 증가 등 국민 부담을 가중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5)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신중검토

- 정보통신기술자에게 설계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하여 설계시장에 대한 인력확보를 강제함으로써 특정 자격 중심의 독점적 구조를 형성할 우려가 있고, 기존 용역업체가 정보통신기술자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며, 건축설비 간 통합이 필요한 융·복합 건축물의 설계시 공종별 협력이 단절된 정보통신기술자에 의한 단독 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설계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문 의 처

02)6788-5235